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6132호)

2026. 2.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. 개요	1
II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대형 재난사고 등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	2

I. 개요

1.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6132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이양수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6. 1. 19.

(3) 회 부 일 : 2026. 1. 20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12. 29.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·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67조제6항 신설)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대형 재난사고 등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(이양수의원안)

현 행	개정안
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(제67조) 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☐ < 신 설 >	☐ 신고기한 연장 근거 신설 ☐ (현행과 같음) ☐ <u>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요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신고기한 연장</u>

☐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☐ 현행법¹⁾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12·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

1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
제67조(상속세 과세표준신고)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0조(자진납부)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.

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물리적·심리적 부담이 크고 법정기한 내 신고·납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·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기한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.

□ 다만, 현재에도 「국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²⁾에 근거하여 재난·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혹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세를 포함한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2) 「국세기본법」

제6조(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2조(기한연장의 사유) 법 제6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납세자가 화재, 전화(戰禍)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2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3.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
4. 금융회사 등(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)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
6. 「세무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(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가 화재, 전화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7. 그 밖에 제1호,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실제로 국세청은 이에 근거하여 지난 12·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신고·납기 기한 연장 등을 안내³⁾한 바 있고,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고·납기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9개월까지 연장을 허가하였다는 설명임.

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납세자 보호 보도 시점 2025.1.2.(목) 16:30 배포 2025.1.2.(목) 16:30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,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-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, 세무검증 유예 등 -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(무안공항)에서 세정지원 24시간 상담 실시 □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,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○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「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」에 상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,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합니다. 특별재난지역 □ (기한 연장등)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 지역(전남 무안군)의 납세자가 ○ 부가가치세, 법인세,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*까지 연장이 가능하며,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*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○ 또한,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*까지 유예 가능합니다. ○ (환급금 조기지급)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'24.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.	○ (세무검증 유예) '25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, -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 피해자 및 유가족 □ 특히,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, '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○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으며,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※ 홈택스 신청방법 [기한 연장] ① 증명·등록·신청 → ②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 → ③ 신고·납부 기한 연장 신청/내역조회 →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하여 신청 [압류·매각유예] ① 증명·등록·신청 → ②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 →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→ ④ 압류·매각의 유예(채납처분유예)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□ 한편, 강민수 국세청장은 1월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'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'에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, - "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."고 말했습니다.
--	---

3) 국세청 보도자료.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,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. 2025.1.2.

문 의 처
02)6788-5161